

화학무기 · 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 · 생물작용제 등의 제조 · 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함진규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6119
----------	------

발의연월일 : 2017. 3. 10.

발의자 : 함진규 · 김병기 · 김석기
정유섭 · 염동열 · 정양석
윤상직 · 안상수 · 조원진
이주영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생물작용제등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고, 시행령은 법률에 위임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축전염병 예방법」 또는 「식물방역법」에 따라 국내반입 허가를 받은 물질이 생물작용제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수입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있음.

한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고위험병원체를 국내반입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어 수입하려는 생물작용제등이 고위험병원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 법의 허가를 각각 받아야 함.

이에 생물작용제등에 대한 수입허가제도 정비의 차원에서, 시행령의 허가 간주규정은 법률로 상향하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내반입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이 법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6항 및 제7항 신설).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
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생물작용제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2조제2항제1호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동물의 전염성 질병의 병원체

2.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1호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병해충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에 따라 보
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고위험 병원체

⑦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은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산업
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물작용제등의 수입규제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6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는 것부터 적용한다.

신·구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2조(수입규제) ① ~ ⑤ (생략) <u><신 설></u></p>	<p>제12조(수입규제) ① ~ ⑤ (현행과 같음) <u>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생물작용제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u></p> <p>1.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2조제2항제1호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동물의 전염성 질병의 병원체</p> <p>2.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1호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병해충</p> <p>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고위험병원체</p> <p>⑦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은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p>
<p><u><신 설></u></p>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